

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후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42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7. 11.

발의자 : 이후삼 · 고용진 · 김경협
송옥주 · 안규백 · 안호영
이상현 · 정세균 · 정재호
조승래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기계설비에 대한 설계,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,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현행법의 시행에 맞추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과 해임에 따른 신고절차,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상속·양도양수·합병에 따른 지위승계와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일부 행정절차상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원활한 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

따라 신고토록 함(안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).

나.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,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,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등에게 지위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1조의 2 신설).

다.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적정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,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을 받아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의2 신설).

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5599호 기계설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④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
⑥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(변경신고를 포함한다)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장에 제21조의2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
 2.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
 3.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
-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.

제22조의2(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정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

록 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

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25조의 제목 “(수수료)”를 “(수수료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에 따른”을 “제1항제2호에 따른”으로 한다.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한다.

1.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자
2.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자
3.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을 하는 자
4. 제21조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자

5.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상속,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는 자
6. 제22조의2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를 신청하는 자

제30조제2항제1호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·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6.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7.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

부 칙

이 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법률 제15599호 기계설비법 제19조(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법률 제15599호 기계설비법 제19조(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</p>
<u><신 설></u>	

<신 설>

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
⑥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(변경신고를 포함한다)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21조의2(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
2.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

3.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

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
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
라 설립되는 법인

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
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
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·도
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
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
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
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
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
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
속인이 제22조제1항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
는 상속 받은 날부터 6개월 이
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기계설
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양도
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22조의2(기계설비의 성능점검
능력 평가 및 공시 등) ① 국
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
정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를

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
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
이 있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성
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을
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
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능력
평가를 신청하려는 기계설비성
능점검업자는 기계설비의 성능
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
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
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
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능력
평가 및 공시의 방법 등 필요
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
정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
따른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
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
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25조(수수료) ① 제20조제1항에
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으려는
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야 한다.

제25조(수수료 등) ① 다음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
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
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.

	<p><u>1.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자</u></p> <p><u>2.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는 자</u></p> <p><u>3.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을 하는 자</u></p> <p><u>4. 제21조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자</u></p> <p><u>5.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상속,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는 자</u></p> <p><u>6. 제22조의2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를 신청하는 자</u></p>
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<u>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, 이를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</u>	<p>② ----- ----- -----<u>제1항제2호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. -----.</p>
제30조(과태료) ① (생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제30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

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----- -----.
1.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<u>국토교통부장관</u> 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	1. ----- ----- ----- <u>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</u> -----
2. • 3. (생략) <u><신설></u>	2. • 3. (현행과 같음) 4.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4. (생략) <u><신설></u>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6.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<u><신설></u> ③ (생략)	7.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(현행과 같음)